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5 제4호누목 신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부터 안전보건대장 기재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위반시, 2차 위반 시, 3차 이상 위반 시 모두 1,000만원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11. 4. ~ 11. 8.)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5 제4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